

202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1897호

다. 제출일자 : 2024. 5. 27.

라. 회부일자 : 2024. 5. 30.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23	718,314	718,314	971,245	935,470	35,775		35,775	96.3
2022	837,897	837,897	854,904	841,370	13,534		13,534	98.4
2021	827,289	827,289	852,069	848,928	3,141		3,141	99.6

- 세입 예산현액은 7억 1,831만원이었으나 실제 9억 7,125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9억 3,547만원을 수납하고, 3,578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6.3%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 비 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3	2,156,531						2,156,531	2,037,750		118,781 (5.5%)
2022	1,923,989	32,185		5,049			1,956,174	1,798,674		157,500 (8.1%)
2021	1,934,336						1,934,336	1,675,987	32,185	226,164 (11.7%)

- 세출 예산현액은 21억 5,6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94.5%인 20억 3,7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1억 1,878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 없음.
- 예산의 전용 없음.
- 예산의 이체 없음.
- 예산의 변경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없음.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억 1,878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비고
2023	2,156,531	118,781	5.5%	
2022	1,956,174	157,500	8.1%	
2021	1,934,336	226,164	11.7%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40백만원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 16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 37만원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 12만원
 - 기본경비 : 23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낙찰차액 : 6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 5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 48만원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61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 11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 7백만원
 - 기본 경비 : 43백만원
- (품질시험소) 낙찰차액 : 12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 2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 10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3	718,314	718,314	971,245	935,470	35,775		35,775	96.3
2022	837,897	837,897	854,904	841,370	13,534		13,534	98.4
2021	827,289	827,289	852,069	848,928	3,141		3,141	99.6

가) 개요

- 세입 예산현액은 7억 1,831만원이었으나 실제 9억 7,125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수납액은 96.3%인 9억 3,547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3,578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세수추계 (결산서 p.12~13)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9억 7,125만원은 예산액 7억 1,831만원의 135%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유
기술심사담당관					
그외수입	7,200	16,800	16,800	9,600	○ 건설기술심의 산청에 따른 수수료로 정확한 개회 횟수 예측이 불가하여 추정치로 예산액 산정
지난연도수입	3,447	13,963	9,548	10,516	○ 세입예산 제출 이후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업무 신규 발생하여 예산액을 넘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발생
과징금	-	60,139	45,047	60,139	○ 영업장자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예측 및 추계가 어려움
기타과태료	39,990	95,524	79,256	55,534	○ 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로 부터 과태료 대상 통보를 받아 부과를 시행하고 있어 정확한 예산액 산정이 어려움 ○ 2023년 세입예산 제출 이후 건전법상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업무 부서에 신설되어 예측치 못한 징수결정액 발생
품질시험소					
주차요금수입	7,776	8,675	8,675	899	○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기관 위치로 인해 내·외부인 자가용 이용 증가
기타사용료	675	706	706	31	○ 청사 임대료의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
증지수입	657,966	769,038	769,038	111,072	○ 도로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아스콘 혼합물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 건수 증가(계획대비 약 120%)
기타이자수입	-	301	301	301	○ 기관명의 통장 발생이자 세입조치
그외수입	1,260	6,099	6,099	4,839	○ 수도미터 민원검사 관련 대형 계량기 의뢰 건수 증가 등

-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의 경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액 72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680만원(233.3%)으로 960만원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기 이후 공사, 공단 등

으로부터 정밀안전, 설계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9건→21건, 아래 [표] 참조)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표] 2023년 건설기술심의 요청에 따른 심의 건수

연번	기관	심의 내용	건수
합 계			21건
1	서울교통공사	5호선 목동~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정밀안전진단	17건
2	서울주택공사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설계심의	1건
3	강남구청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심의	3건

-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최근 3년간('19년~'21년)의 평균수수료에 평균 부과 건수를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심의요청 건수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됨.
-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 신고 지연 및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등으로, 예산액 345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396만원으로 1,051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예산편성 당시 기존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 변경 신고 지연 과태료분 만을 추계하였으나, '22.6.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 중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¹⁾ 업무가 신규 발생하면서 부과분이 당해연도에 납부되지 못하고 체납됨에 따른 것인데,
- 총 37건 중 22건, 955만원이 납부 완료하였고, 15건, 441만원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제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457호 (2022. 6. 9.)

이 미수납된 상황으로(아래 [표] 참조) 독촉장 발송, 연체 이자 및 가산금 부과 등 더욱 적극적인 납부고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023년 기술심사담당관 지난년도 수입 항목별 현황

(’23. 12월 기준, 단위 : 천원)

지난년도수입	부과		수납		미수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3	13,963	28	9,548	15	4,415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37	10,390	22	5,975	15	4,415
건설엔지니어링업 퇴사자 신고지연 과태료	6	3,573	6	3,573	-	-

- ‘과징금’²⁾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허위등록, 부정행사, 감리소홀’ 등의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6,014만원이 징수결정 되어 4,505만원이 수납되었음.
- 이는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에 변조하여 등록(아래 [표] 참조)함에 따라,
- 서울시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³⁾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46조⁴⁾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를 부과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과징금 납부를 택하여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가산금을 합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24.5.31일)한 것으로 확인됨.

[표] 2023년 기술심사담당관 과징금 부과 현황

('24. 6월 기준, 단위 : 원)

업체	부과	납부내역			부과 사유
합계		60,139,290	30,000,000	30,139,290*	
(주)백○○○○	30,000,000	30,047,130	15,000,000 (납부일2023.7.20.)	15,047,130* (납부일2023.8.21.)	○ 시험검사시 수집된 최초 수기 기록-원시데이터 없이(폐기) 품질검사성적서 발급
신○○○○○(주)	30,000,000	30,092,160	15,000,000 (납부일2023.7.21.)	15,092,160* (납부일2024.5.31.)	○ 품질검사시험서 발급내용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건설사업정보포탈시스템(http://www.calspia.go.kr)] 입력 정보 미일치

※ 2차 납부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연이자 포함금액

- 는 경우
 가. (생략)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다. ~ 마. (생략)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생략)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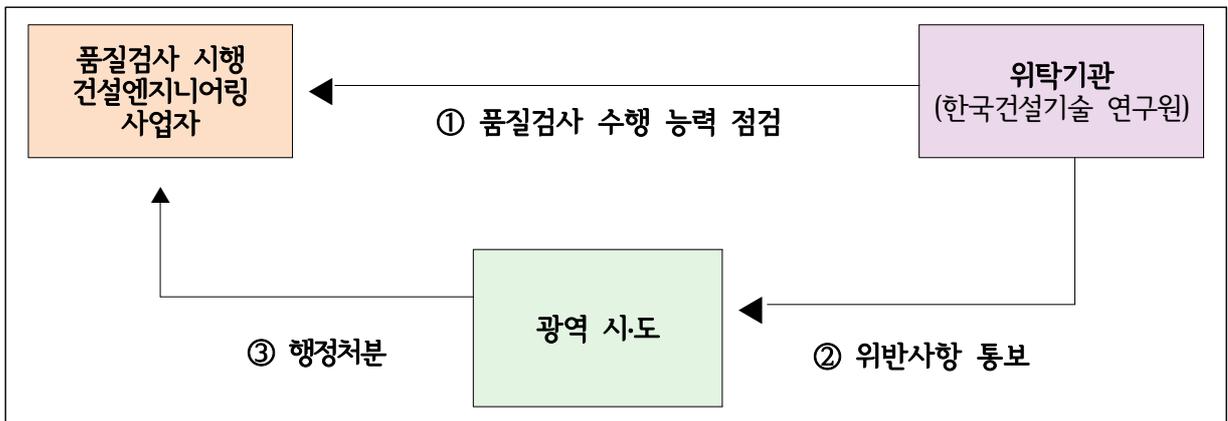
1. 일반기준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7호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7호 나목	영업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정지 6개월	6천만원		

- 참고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⁵⁾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고 위반사항을 시·도로 통보하면, 처분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아래 [그림] 참조)



[그림] 품질검사 위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 ‘기타과태료’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지난년도수입’의 발생 배경과 동일하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⁶⁾으로 예산액 3,999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9,552만원으로 5,553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아래 [표] 참조)

5)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표]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b)-(a)
2023년	39,990	95,524	79,256	55,534
2022년	38,613	46,925	36,856	9,969
2021년	38,702	102,485	101,645	63,783
2020년	35,000	40,065	40,065	5,065

- 이는 최근 3년간('20년~'22년) 평균 부과 건수를 반영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실제 징수는 협회로부터 위반건수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예측치보다 위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임.

[표]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지연 과태료 추계액 : 3,999만원 - '20~'22년도 평균 징수액(전망액) (40,065천원 + 40,658천원 + 39,253천원) ÷ 3 = 39,990천원 ※ 2021년 결산액의 경우 일제점검 실시 등 특수상황 고려하여 40%만 적용
--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주차요금수입'은 「주차장법」 제19조의37) 및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8)에 근거하여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을

- 7)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 8)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 로고를 부착한 관용차량.
 2. 언론기관 로고 부착 등 보도차량으로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
 3. 국회의원, 시·구의원 차량
 4.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단체견학 차량, 물품납품 화물차량
 5. 당해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방문차량(해당 과장 확인)

이용하는 직원 및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이며, 예산액 778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868만원으로 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표] 주차요금 수입 세수추계 산출근거

·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추계액 : 778만원
- 산출액 : 7,560,000+216,000 = 7,776,000원
- 산출내역 - 정기주차 : 630,000원×12월 = 7,560,000원
- 일일주차 : 18,000원×12월 = 216,000원
※ 2020년~2022년 5월현재 평균금액으로 산정

- 이는 최근 3년간('20년~'22년)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직원 및 민원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기관 위치로 인해 내·외부인의 자가용 이용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기타사용료'는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과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⁹⁾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¹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예산액 6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70만원으로 3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임.

9) 서울시와 ○○○○○○협동조합과의 협약(허가기간 '14. 8.18~'24.8.17)에 의거 품질시험소 옥상을 10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음에 따라 세입 전망액으로 편성.(2014.9. 준공. 용량 36kw)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표] 기타사용료 수입 세수추계 산출근거

- 품질시험소 기타사용료 수입 추계액 : 67만원
- 산출내역 : 본관 사용료(태양열 발전시설) : 674,900원
[공시지가(2,932,000원)×건축부지면적(1,278.8㎡)×옥상지수(0.018)]×요율(10/1000)= 674,900원

- 참고로, 품질시험소 민간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14년도에 ○○○○○협동조합과 10년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올해로 계약기간이 만료('24.8.17일)됨에 따라 금년 5월 재연장(7년)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협약을 서울시(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와 체결한 상황임.
- '증지수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¹¹⁾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¹²⁾에 근거한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각종 계량기 수수료이며 예산액 6억 5,797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7억 6,904만원으로 1억 1,107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서울시설공단 등 산하기관의 시험의뢰 건수('22년 대비 131%↑)와 민간 제품제작사 등의 품질확인 시험 건수('22년 대비 216.1%↑) 등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른 것임.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기타이자수입’은 기관명의 통장에 대한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23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는데, 이자수입은 매년 발생할 여지가 있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그 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세입과목으로 세수를 추계하여 편성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그외수입’은 수도미터 검정 수수료¹³⁾ 126만원을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수도미터 민원검사 관련 계량기 의뢰 건수가 당초 예측치보다 증가(384대→1,858대)함에 따른 것으로 484만원 증가한 610만원 징수하였음.
 - 이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¹⁴⁾에 따라 민원 요청에 의한 수도계량기 검사 후 계량기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시험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어 의뢰 건수가 감소할 것을 예측하였으나 반대로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정상 계량기로 판명 나는 경우도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487호, 2019. 12. 12 시행)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① 법 제23조(검정)제1항과 제24조(재검정)제1항 및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및 필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1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미수납액(결산서 p.41)

-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1,354만원) 대비 2,224만원 증가한 3,578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지난연도수입 442만원, 과징금 1,509만원, 기타과태료 1,627만원임.

[표]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 징수 현황

(*24. 5월 기준, 단위 : 천원)

세목	부과		미수납액 (2023회계연도 결산시점)		미수납액 징수현황	
	건수	징수결정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46	169,626	78	35,775	13	18,187
지난연도수입	43	13,963	15	4,415	1	294
과징금	4	60,139	1	15,092	1	15,092
기타과태료	399	95,524	62	16,268	11	2,801

- 이 중 과징금 미수납액 1,509만원은 서울시의 지속적인 징수 노력으로 올해 전액 징수 완료(*24.5월 기준)하였으나, 지난연도 수입은 15건 중 1건만이 징수 완료되어 14건이, 기타과태료는 62건 중 11건만이 징수 완료되어 51건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 징수활동 강도에 따라 최소화 가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습관성 납세태만을 근절하고 납세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세 출 결 산

■ 기술심사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3	870,261	-	-	-	-	-	870,261	824,343	-	45,918 (5.3%)
2022	758,009	-	-	-	-	-	758,009	694,535	-	64,474 (8.4%)
2021	741,081	-	-	-	-	-	741,081	683,394	-	57,687 (7.8%)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8억 7,026만원으로 이 중 94.7%인 8억 2,434만원을 지출하고 5.3%인 4,592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억 7,026만원 대비 5.3%인 4,592만원으로 작년 대비 3.1%p 감소(8.4%→5.3%)하였음.

[표]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5,716	16,387	4.1
2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5,811	370	0.8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175	122	0.8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0,000	5,134	5.7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7,253	481	1.0
6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50,000	-	-
7	기본경비	126,306	23,424	18.5
	합 계	870,261	45,918	5.3

- 먼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사업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회 예산현액 3억 9,572만원 중 3억 7,933만원을 지출하고 4.1%인 1,639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7만원과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1,435만원에 해당함.
 -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심사담당관의 국외출장 자제(1회만 시행)로 불용이 발생한 것이라 밝히

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편성된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 할 것임.

[표] 2023회계연도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집행잔액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건설기술 심의회운영	계	395,716	379,329	16,38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694	7,692	2
	사무관리비	319,780	319,742	38
	공공운영비	2,000	132	1,868
	국외업무여비	20,000	5,647	14,353
	시책업무추진비	8,370	8,369	1
	특정업무경비	25,872	25,870	2
	행사실비지원금	12,000	11,877	123

- 다음으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 예산현액 9,000만원 중 8,487만원을 지출하고 5.7%인 51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서
2023	90,000	90,000(100.0%)	84,866	94.3%	9개 기관 9개 부서
2022	90,000	86,833(96.5%)	79,941	88.8%	8개 기관 10개 부서
2021	90,000	89,985(99.9%)	86,022	95.6%	11개 기관 15개 부서

- 금회에는 총 29건의 사업에 9,000만원을 배정해 8,487만원을 지출하여 5억 7,835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아래 [표] 참조)를 보았는데 동 사업의 경우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크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시행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 효과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배정 금액	집행 금액	외주용역 예상금액	절감액
	계		90,000	84,866	663,211	578,345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등 5건	12,150	11,495	18,289	6,794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4,430	4,250	6,653	2,403
3	서부공원여가센터	경의선숲길 계류주변 안전시설 설치공사 등 4건	11,491	8,807	20,790	11,983
4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 등 3건	5,499	5,000	175,384	170,384
5	중랑구	용마산로115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7건	16,642	15,800	300,457	284,657
6	은평구	보행자우선도로 유지보수사업 등 4건	18,826	18,826	79,917	61,091
7	중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983	2,983	8,316	5,333
8	노원구	산사태 예방사업 등 3건	8,785	8,785	37,422	28,637
9	서초구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노면표시	9,194	8,920	15,983	7,063

- ‘기본경비’는 해당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산현액 1억 2,631만원 중 1억 289만원을 지출하고 18.5%인 2,342만원을 불용하였음.
- 주된 불용사유는 비대면 업무수행 추세로 인해 출장 등을 자

제함에 따라 국내여비 2,317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동 사업 역
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여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품질시험소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불용율)
2023	1,286,270						1,286,270	1,213,407		72,863 (5.7%)
2022	1,165,980	32,185		5,049			1,198,165	1,104,139		94,026 (7.8%)
2021	1,193,255						1,193,255	992,593	32,185	168,477 (14.1%)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12억 8,627만원으로 이 중 94.3%인 12억 1,340만원을 지출하고 5.7%인 7,286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1)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2억 8,627만원 대비 5.7%인 7,286만원으로 작년 대비 2.1%p 감소(7.8%→5.7%)하였음.

[표] 2023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288,953	11,262	3.9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00,920	2,275	2.3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508,731	16,872	3.3
4	기본경비	387,666	42,454	11.0
	합 계	1,286,270	72,863	5.7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억 8,895만원 대비 3.9%인 1,12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1,096만원 등 5개 항목에서 발생한 지출잔액으로 인한 것이며, (아래 [표] 참조)

[표]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항목별 상세사유 (단위: 천원)

통계목 (세부사업)	세세부 항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총 계		142,796	131,840	10,956	
사무 관리비 (건설자재 품질시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외부위원 수당	55,000	51,480	3,520	집행잔액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외부위원 수당	30,000	26,840	3,160	집행잔액
	품질관리 교육교재 발간	6,000	5,695	305	집행잔액
	강사료 등 교육 운영비	7,200	5,983	1,217	집행잔액
	민원처리 카드대행 수수료	4,500	3,570	930	집행잔액
	피복비	1,880	1,880	-	
	시험장비 교정 수수료	38,216	36,392	1,824	집행잔액

- 세부 내역을 보면 강사 초빙, 현장점검, 시험장비 교정 등의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8,767만원 대비 11%인 4,245만원이 불용 되었는데, 주요 항목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6만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3,193만원 등에 해당함.
- 세부내역을 보면 통신장비 유지보수 낙찰 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906만원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현장점검 감소, 가스미터 검정 축소 등 전반적으로 비대면 업무수행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 3,193만원이 발생한 것이나,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율화된 최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붙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없음.